

안전한 도시철도, 편리한 교통서비스



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운전관제사 음주측정 결과 보고(9월)

1. 관련근거

- 가. 철도안전법 제41조(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)
- 나.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3조(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)
- 다. 철도안전관리체계 11.3.4(철도종사자 관리)

2. 위와 관련하여 우리 센터 관제업무 적합성 검사를 위한 음주측정 결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- 가. 측정기간: 2017. 9. 1. ~ 9. 30.
- 나. 측정결과

측정대상	측정인원	측정결과
운전관제	59명	이상자 없음(기준 : 0.03% 미만)

붙임 2017년 9월 음주측정결과 1부. 끝.

차장 노희원

팀장 박승희

센터장 10/16
이용만

협조자

시행 제2종합관제센터-2483 (2017. 10. 16.) 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eoulmetro.co.kr
전화 6005 전송 7008 / heewon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